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10. 17 선고 2024나43222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10. 17 선고 2024나43222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4. 18 선고 2023가단246672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의 소송수계인 B

원고보조참가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하

피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스

담당변호사 박형일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정연준

변론 종결 2024. 8. 29.

판결 선고 2024. 10. 17.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4. 18. 선고 2023가단246672 판결

주문

- 이 사건 소송은 2024. 7. 2.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 소송종료 후 생긴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피고와 원고 소송수계인(이하 '원고'라고 한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10. 6. 체결된 매매계약을 58,432,94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에게 58,432,94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참가인과 원고 사이의 신용보증약정

1) 참가인은 2019. 8. 14. C마트를 운영하던 원고와 사이에, 원고의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사당동지점에 대한 기업일반운전자금대출채무에 대하여 보증금액 1억 3,500만 원, 신용보증기한
2020. 8. 13.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참가인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원고는 그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참가인이 정한 율에
의한 손해금(제10조 제1항 제2호)과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등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

3) 참가인은 2019. 8. 14. D 사당동지점장에 보증금액 1억 3,500만 원, 피보증인 원고, 보증기한
2020. 8. 13.로 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4)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한 등의 보증조건은 매년 변경되었는데, 최종적인 보증기한은

2023. 8. 10.이고, 보증금액은 1억 3,500만 원이며,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참가인이 정하는 율'은 연 8%였다.

나. 보증사고의 발생 및 보증채무이행

1) 원고는 2019. 8. 19. 이 사건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D으로부터 15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2) 원고는 2022. 10. 13. 사업장을 폐쇄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보증부실사유1)가 발생하였고, 참가인은 2022. 12. 9. D에 대출원리금 117,778,931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같은 날 원고로부터 1,407,840원을 회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대위변제금 잔액은 116,371,091원(=117,778,931원-1,407,840원)이고, 회수금에 대한 손해금은 308원[=1,407,840원×8%×1/365(2022. 12. 9.~2022. 12. 9.)], 채권보전비용은 245,650원이 발생하였다.

다. 원고의 부동산 처분경위

원고는 2022. 10. 12. 자신의 오빠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2. 10. 6.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고,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에 존재하던 D의 순위번호 5, 6번 각 근저당권(피담보채무액 합계 32,567,060원)을 각 말소하였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마. 참가인은 2023. 2. 21. 이 사건 매매계약이 참가인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위 매매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2022. 10. 21. 개인회생신청(수원회생법원 2022개회183031호)을 하여 2024. 5. 9.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8호증, 을 제1, 2, 4, 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송종료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4조, 제347조 제1항, 제406조에 의하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채무자가 부인권을 행사하고, 법원은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으며, 개인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는 수계 또는 개인회생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중단된다. 따라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에 이미 채권자취소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채무자가 소송을 수계하여야 하고, 소송을 수계한 채무자는 기존의 채권자취소소송을 부인의 소로 변경하여야 한다.

나. 원고가 2024. 5. 9.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2024. 5. 22. 참가인이 제기한 이 사건 소송에 대한 소송절차 수계신청을 하고, 2024. 5. 23. 이 사건 소를 전부 취하한다는 내용의 소 취하서를 제출한 사실, 참가인은 2024. 7. 15. 원고를 보조하기 위해 보조참가신청을 한 사실, 피고는 2024. 6. 17. 소취하서를 송달받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피고는 참가인이 원고의 소 취하에 대한 부동의서를 제출한데 대하여 원고의 소 취하가 유효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원고는 적법하게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고 이 사건 소를 취하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소 취하서를 2024. 6. 17. 송달받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2주가 경과한 2024. 7. 2. 소 취하로 종료되었다.

다. 참가인은 원고가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이 사건 소 취하서를 제출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하나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에 이미 제기되어 있던 채권자취소소송을 채무자가 소송수계 후 취하함에 있어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법률상 근거가 없으므로, 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참가인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에 근거하여 원고가 이 사건 소 취하서를 제출함에 있어서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조항은 위 법률 제4편 개인회생절차에서 준용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이 사건 소송은 2024. 7. 2. 소취하로 종료되었고, 참가인이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소송종료를 선언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차은경

판사장재윤

판사김우정

별지

1)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제6조(사전구상)

① 본인에 대하여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신보로부터 통지, 최고가 없더라도 신보가 보증하고 있는 금액에 대하여 사전상환의무를 부담합니다.

2. 폐업하였거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